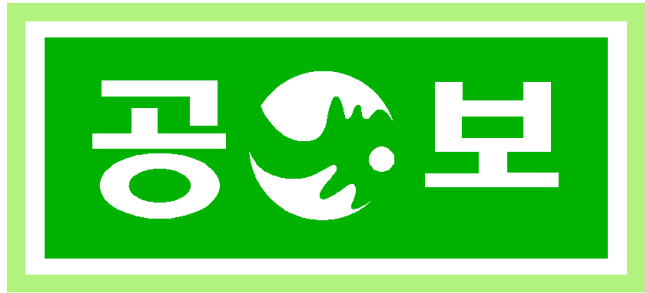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07 호 2013. 3. 26(화)**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318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321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32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2. 3.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선발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13. 4. 5(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임 기 : 2년(위촉일로부터)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6.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 담당자 류성만  
☎ 052-241-7722/E-메일 : ryusm77@korea.kr
7. 선정결과 : 2013년 4월 8일(월)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기관 종사자)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중 문화의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행정업무 총괄에 포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주민참여과 업무 추가(부서업무 명확화)

- 추가 명시업무 :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부서업무를 명확화

#### 나. 문화체육과 업무중 일부 삭제

- 삭제 업무 : 문화의집 지원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주민참여과에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에서 삭제

###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4.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 전화:052-241-7102, 팩스: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로 하고, 제5조제2항제4호를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5조제2항제1호 (생략)	제1조~제5조제2항제1호 (현행과 같음)
제5조제2항제2호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미즈 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제2호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미즈 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u>동행정업무 총괄</u> , <u>세대공간창의놀이터 운영</u>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제3호 (생략)	제5조제2항제3호 (현행과 같음)
제5조제2항제4호 문화관광, <u>문화의집 지원</u> , 체육, 체육시설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제4호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제5호~제13조 (생략)	제5조제2항제5호~제13조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3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자연감소인력을 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고,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13명 ⇒ 518명 (증 5명)
- 일반직 계 : 469명 ⇒ 474명 (증 5명)
  - 6급이하 계 : 434명 ⇒ 439명 (증 5명)
- 별정직 계 : 1명 ⇒ 1명 (변동없음)
- 기능직 계 : 42명 ⇒ 42명 (변동없음)

###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4.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 전화:052-241-7102, 팩스: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18	-			
정 무 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7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39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기 능 직 계	42	-			

## 신·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3]</b>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b>[별표 3]</b>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동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동
총 계	513	-				총 계	518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69	-				일반직 계	474	-			
3급	1	1				3급	1	1			
4급	4	3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34	-				6급이하 계	439	-			
별정직 계	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계	1	-				6급상당 이하계	1	-			
기능직 계	42	-				기능직 계	42	-			